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422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8. 3. 20.
4. 회부일자 : 2018. 3. 26.

II. 제안이유

- 교육부가 2018년 총액인건비 예비통보 대비 확정통보에서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1. 정원의 총수 증원 (안 제2조): 증 12명 (7,243명 → 7,255명)

- 본청 · 교육지원청 ·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

: 증 6명(6,753명 → 6,759명)

-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

: 증 6명(485명 → 491명)

나.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- 총계 증원: 증 12명 (7,243명 → 7,255명)
 - 일반직 정원 증원: 증 6명 (6,755명 → 6,761명)
 - 4·5급: 증 1명 (6명 → 7명)
 - 5급 이하 소계: 증 5명 (6,674명 → 6,679명)
 - 특정직 정원 증원: 증 6명 (485명 → 491명)
 - 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
: 증 6명 (435명 → 441명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[별첨 2] 참고.
3. 기 타 :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의안 [별첨 1] 참고.
 - 입법예고(2018. 3. 16. ~ 3. 18.) : 의견 없음.
 -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 -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.
 -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22호로 제출되어 2018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8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따라 일반직·특정직공무원의 기준인원을 추가로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정원 조례개정 경과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3월 15일 교육부가 통보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'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'을 기준으로 1)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6809호)를 개정하여 기존 6,648명에서 6,753명으로, 특정직을 460명에서 485명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의 7,113 명보다 130명 증가한 7,243명으로 조정함바 있습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「2018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」를(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-1194, 2018.2.27) 시달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의 총액인건비가 기존 예비통보와 달리 각 4억 2천 1백만원(4,767억 1천 8백만원)과 6억 4천 4백만원(517억 2천 9백만원)이 증액 되어 기존의 예비산정 기준인원보다 일반직과 특정직 각 6명씩 총 12명을 기준인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1)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5428, 2017.10.20.

나. 총액인건비와 기준정원

-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7,243명에서 12명 증원된 7,255명으로 하되 일반직의 경우 기존 6,755명에서 4·5급 복수직을 1명, 5급 이하 일반직을 5명 증원하여 6,761명으로 하였고, 특정직은 기존 485명에서 491명으로 하였습니다.
- 이 중 일반직인 4·5급 복수직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개정에서 노사협력담당관(4급)의 설치로 복수직 1명을 감원하였던 것으로(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) 최근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이 개정되어²⁾ 4급 이하 정원 책정에 있어 각 시·도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7명으로 기준인원을 복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또한 특정직의 경우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을 기준인원 482명 보다 9명이 많은 491명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예비산정 기준인원 476명 보다 6명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) 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관계 법령

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8.2.27.] [대통령령 제28679호, 2018.2.27., 일부개정]

제4조(총액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(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2.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
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